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2022. 9. 16.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22년 9월 7일

다. 회부일자: 2022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2022년 9월 16일,

(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안용모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 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개별법령에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

-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정한 규정 위헌 판결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19두59851 판결]로 해당 조문 삭제

나. 주요내용

-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에서 1억5천으로 상향(제2조제1항제1호)
-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한 문구 삭제 (제2조의3 및 별표2)
-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가. 조례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보상한도 규정과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19두59851 판결]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의 개정사항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금액 기준을 1인당 1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하도록 함
- 안 제2조의3 제3항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사항을 반영하여 남녀 좌석구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

- 위헌 판결은 사건 ‘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’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2022년 1월 27일 판결한 내용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「전라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3 제2호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음
- 또한, 제2조의3 제3항 관련 별표2의 나항의 “남·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·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” 를 삭제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,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대법원 판결사항을 반영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1억원”을 “1억5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56조제3항”을 “제56조제5항”으로, “비치하여야”를 “갖추어 두어야”로 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“학원에 있어서”를 “학원의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의3제3항 본문 중 “수용인원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”를 “수용인원은 0.8명 이하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”을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2조의4제2항 중 “2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제2조의2제1항제1호”로,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절차, 기타 필요한”을 “절차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제목 중 “실험·실습·실기등을 요하는”을 “실험·실습·실기 등이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독서실의 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란 (2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
요한 시설·설비 및 교구

3. ~ 6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제2조의3(단위시설의 기준) ①·

② (생 략)

③ 열람실은 45제곱미터 이상으
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
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
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
열하여야 한다. 다만, 남녀별 좌
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
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
사용할 수 있다.

④ ~ ⑦ (생 략)

제2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

① (생 략)

② 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강
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
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
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·실습
·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
되는 학원을 말한다.

③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
실험·실습·실기 등이 필요한
학원의 시설·설비 및 교구기준
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별표 2

-- 학원의 경우에는-----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3(단위시설의 기준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수용인원
은 0.8명 이하로-----

-----. 다만,-----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2조의2제1항제1호-----
않을-----

③ -----

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.

제9조(행정처분)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, 기준,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[별표 2]

실험·실습·살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·설비 및 교구기준
(제2조의4제3항 관련)

계열	교습과정	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	비고
예능 ~ 기예 (생략)			
독서실	63.독서실	가. 시설 (1) 열람실: 시지역 60㎡이상, 군지역 50㎡이상 나. 설비 (1) 열람대 일시수용능력 1명당 1대 (2) 남·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·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 다. 그 밖에 필요한 시설·설비 및 교구	

----- 않은 -----

-----.

제9조(행정처분) -----

----- 절
차에 관한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실험·실습·살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·설비 및 교구기준
(제2조의4제3항 관련)

계열	교습과정	시설·설비 및 교구 기준	비고
예능 ~ 기예 (현행과 같음)			
독서실	63.독서실	가. 시설 (1) 열람실: 시지역 60㎡이상, 군지역 50㎡이상 나. 설비 (1) 열람대 일시수용능력 1명당 1대 다. 그 밖에 필요한 시설·설비 및 교구	

관 계 법 령

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

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③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·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
제8조(시설기준)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76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)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·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
<본조신설 2020. 6. 9.>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]

제84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)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”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.

1. 사망의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
2. 부상의 경우: 3천만원 이상
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 <본조신설 2021. 6. 10.>

[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업무기준(고시) 별표]

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(제2조 1호 관련)

“재난안전의무보험”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.

1. ~ 40. 생략

4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42. ~ 46. 생략 <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95호, 2021. 6. 15. 제정>

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는 대법원 판결 및 관련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

4. 작성자: 행정국 재무과장 한명수